



## 대 구 고 등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24누123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성○○, 이○○, 김○○

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2487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9. 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44,952,1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82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5. 17. 병아리 분양 및 양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총수는 보통주 10,000주이고,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총 자본금 50,000, 000원)이었으며,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기재와 같았다.

| 주주 | 주식 수    | 지분율  |
|----|---------|------|
| 원고 | 5,000주  | 50%  |
| C  | 2,000주  | 20%  |
| D  | 1,500주  | 15%  |
| E  | 1,500주  | 15%  |
| 합계 | 10,000주 | 100% |

나. 2020. 12. 31. C, D, E(이하 3명을 함께 지칭할 경우 'D 등'이라 한다)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 총 5,000주(= C 부분 2,000주 + D 부분 1,500주 + E 부분 1,500주)의 명의가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23. 1. 10. '원고가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1,648,762,9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44,952,19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824,62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한 회사이고, D 등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 역시 원고가 실질 주주이며, 원고는 2020. 12. 31. D 등과 사이에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명의 이전을 통해 원고의 실제 주식보유 비율이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8 내지 11, 14 내지 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1) 원고와 D 등의 관계 등

가) D은 현재 ○○ ○○군 F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자로, 원고와 2005년경부



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원고는, 1987년경부터 E의 배우자인 G와 서로 알고 지냈고, 2000년경부터 C의 배우자인 H과도 서로 알고 지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D은 위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6. 12. 6.경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2)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상황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업인이 아니었고, D은 위 법률상의 농업인에 해당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1. 5. 17. 원고 배우자 I 명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 구 J은행(현재: 주식회사 K) 계좌로 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관할 등기소에 주금납입증명을 위해 제출한 구 J은행 명의의 '2011. 5. 17.자 예금/신탁잔액증명서'에는 그 예금잔액이 '52,854,282원'으로, 발급용도가 '법인설립'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 관련 내용

가) 원고와 D 등은 'D 등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위탁자인 원고에게 다시 이전한다'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 해지계약서'(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하였고, 그 작성일시는 모두 2020.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1. 3. 31.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에는 'D 등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등 실명 전환"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주식 변동사항'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과세관청은 'D 등이 2011.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D 등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원고가 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D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명의를 빌려주었고, 2020. 12. 31.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이를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D 등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C는 2025. 6. 13.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편인 H을 통해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가 되었다. 주식보유 비율, 다른 주주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원고가 2020년 12월 말경 이 사건 해지계약서 등을 가지고 와서 해당 서류들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4) 과세관청의 별도 과세처분 내용 등

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09. 6. 19. 병아리 분양 및 종란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 10,000주이고,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총 자본금 50,000,000원)이었다.

나) L 설립 당시부터 2016. 1. 28.경까지 위 발행주식 중 3,000주(지분율 30%)는 C 명의로, 1,500주(지분율 15%)는 D 명의로, 1,500주(지분율 15%)는 M 명의로 되어 있었다.

다) 2016. 1. 29. D 및 M 명의로 되어 있던 위 L 발행주식(각 1,500주)이 각각 원고의 자녀인 N, O 명의로 이전되었고, C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3,000주)은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과세관청은 2019년도에 위 다)항 기재 주식 명의 이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 결과 '원고가 L 설립 당시부터 C, D, M에게 L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자녀들 명의로의 주식 이전은 원고의 우회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 등을 하였으며, 원고가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한편, L 설립 당시부터 2017. 12. 12.경까지 D, M은 원고의 배우자인 I과 함께 L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 다. 판단

###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정의와 달리 실



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 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의 실질 주주였고, D 등에게 그중 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이를 해지하고, 그 주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회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20. 12. 31.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5,000주를 새롭게 취득하여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D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반면에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그 주식 납입대금을 마련하였다고 보기 충분하고, 실제 이 사건 회사 운영도 단독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

② 물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D의 농업인 자격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과점주주에 따른 과세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그 주주 명의를 D 등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D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이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피고는, D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D은 주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운영한 L 역시 D이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과세관청은 2019년도에 'L 발행주식 중 D 명의 주식 역시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과세관청



의 판단과 달리 볼 만한 D의 구체적인 역할 등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또한 D 이외의 C, E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적도 없고, C의 당심 증언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원고와 친분이 있던 배우자들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는 L과 관련된 과세처분이 있자 이 사건 회사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D 등과 이 사건 해지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주식 명의를 전부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역시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D 등과 이 사건 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주식명의 이전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한편, 피고는 D 등이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만을 내세울 뿐,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 주장만을 근거로,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뒤집고, D 등이 당초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였고, 원고가 2020. 12. 31. 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08

재판장      판사      곽○○

            판사      송○○

            판사      박○○



## [별지]

### 관계 법령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증여세 납부 의무)

-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



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세기본법

### 제17조(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총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